

## 경기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

(제정) 2009-05-18 규칙 제 3376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경기도 경관 조례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경관계획 수립의 제안)** 「경기도 경관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에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3조(경관사업 승인신청)** 「경관법」(이하 "법"라 한다)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당연직 위원)**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기도 경관위원회 위원과 같은 조례 제13조제2항의 경기도 공동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행정1부지사, 기획조정실장, 도시주택실장과 경관 및 도시업무 관련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**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 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 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서면으로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
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한다.  
④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되, 관계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회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개할 수 있다.  
⑤ 제4조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 하게 회의를 참석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실·국 소속 바로 아래직급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 할 수 있다.

**제7조(행정지원)**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과장,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사무관을 위원장이 임명한다.

**제8조(안전상정)** ①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안건은 회의개최 60일 전까지 경기도(이하 "도"라 한다)에 접수된 것에 한정하며, 회의 자료는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회의에 올리는 안건은 주민의견 청취나 공청회의 결과를 요약하여야 하며, 주요 안건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야 한다.

③ 심의안건과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. 다만, 미리 배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의견청취·자료요구)** 위원장은 안전심의를 위해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10조(의결권 포기)**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위원의 표결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**제11조(현지조사)**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필요하면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2조(회의록)**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1. 개회·폐회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의 서명
3. 심의사항
4. 회의 진행상황
5. 위원 발언내용
6. 심의결과
7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3조(업무상 중요내용 대외누설금지)** ①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이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된 업무상 중요내용을 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외부로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을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.

**제14조(운영규정)**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